

등록금심의위원회 규정

개정 기록표

번호	개정일자	개정자 (서명)	번호	개정일자	개정자 (서명)
1	2014. 1. 16		16		
2	2015. 1. 13		17		
3	2016. 5. 27		18		
4	2018. 3. 1		19		
5	2018. 4. 13		20		
6	2018. 6. 15		21		
7	2021. 1. 18		22		
8	2022. 5. 2		23		
9	2024. 4. 29		24		
10			25		
11			26		
12			27		
13			28		
14			29		
15			30		

등록금심의위원회 규정

-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고등교육법」 제11조제2항, 「사립학교법」 제29조제4항 내지 제31조제3항 및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2조에 의거하여 등록금심의위원회 (이하“위원회”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심사·의결한다.
1. 해당 학년도의 등록금액 및 인상·인하를 심의
 2. 예산 및 결산 심사·의결
-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회는 교직원(학교법인이 추천하는 재단인사 포함), 학생, 관련 전문가(학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외) 중에서 각각의 구성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자로 구성하되, 학부모 또는 동문(同門)을 포함할 수 있다.<개정 2021.1.18>
- ③ 제2항에 따라 학생 위원은 전체 위원 정수(定數)의 10분의 3 이상, 구성단위별 위원은 10분의 5 미만이 되도록 한다.<개정 2021.1.18>
- 제4조 (자격)** ① 교직원 위원은 전임교원 또는 재직직원으로 한다.<개정 2015.1.13.,2018.4.13>
- ② 학생 위원은 등록금 책정 대상 학년도 재학생으로 한다. 단, 등록금 책정 대상 학년도 개시 전에 위원을 위촉할 경우 대상 학년도 재학예정자로 위촉 할 수 있다.<개정 2015.1.13.>
- ③ 관련전문가 위원, 학부모 및 동문 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한다.<개정 2015.1.13.>
- ④ 제1항, 제2항 본문, 제3항의 자격을 상실한자는 자격상실 사유가 발생한 즉시 본 위원회의 위원 자격을 상실한다.<개정 2015.1.13.>
- 제5조 (위원 및 위원장의 위촉)** ① 교직원 위원은 기획처장, 교무처장, 학생처장, 사무처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총장이 위촉한다.<개정 2018.6.15>
- ② 학생 위원은 총학생회에서 추천을 받아 총장이 위촉한다.
- ③ 관련 전문가 위원은 대학의 재정과 예산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자 또는 교육 행정 관련 전문가 중에서 총장이 위촉한다.
- ④ 학부모 위원은 본교 재학생의 학부모 중에서, 동문 위원은 총동문회 소속 동문 중에서 총장이 위촉한다.
- ⑤ 위원장은 기획처장으로 한다.
- ⑥ 제3항과 관련하여 관련 전문가 위원을 선임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를 대표하는 측과 학생을 대표하는 측이 협의하여야 한다.<신설 2021.1.18>

제6조 (임기) 위원 및 위원장의 임기는 1년 이내로 하고,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7조 (회의) ① 위원장은 재적위원 10분의 4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한다. <개정 2022.5.2.>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안건 및 회의 자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 위원에게 통지 및 송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회의일시, 장소, 안건 : 회의 개최 7일(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전까지 통지

2. 회의 자료 : 회의 개최 5일(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전까지 송부

<개정 2018.4.13.> [본항 전문개정 2022.5.2.]

③ 위원장은 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이 아닌 교직원, 학생, 관련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본항 신설 2022.5.2.>

제8조 (의결) 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2.5.2>

②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9조 (비밀유지) 위원 및 관계 교직원은 위원회를 통하여 알게된 기밀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0조 (위원회의 사무) ① 위원회의 사무는 예산평가팀에서 관장한다.<개정 2016.5.27.>

② 사무부서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발언 요지, 결정 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고 결과를 회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학교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게재일로부터 3년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 단,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8.3.1., 2024.4.29.>

제11조 (수당) 위원회 위원 중 교외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통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준용)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 및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1월 16일부터 시행하되, 2013년 12월 26일부터 적용한다
2.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5년 1월 13일부터 시행하되, 2014년 12월 26일부터 적용한다
3.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6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4.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8년 4월 13일부터 시행한다.
6.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8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7.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1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8.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2년 5월 2일부터 시행한다.
9.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4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